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의안번호 : 제1109호

나. 제안자 : 박영한 의원 외 45명

다. 제안일 : 2023. 8. 14.

라. 회부일 : 2023. 8. 21.

### 2. 제안이유

- 사회적 고립청년의 다양한 특성과 상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용어를 재정 의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사회적 고립청년과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 및 의무적으로 실시하고자 함
- 또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사회·심리·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사유에 따라 복합적인 현상과 상태로 나타나기에 고립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중장기적인 서비스 체계가 필요함
- 이에 고립청년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재고립 방지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안 제2조제2호)
- 나. 실태조사 의무화를 추가 규정함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 다. 지원사업에 고립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및 공간 운영 사업을 규정함 (안 제8조제1항제6호)
- 라. 지원시설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마.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 근거를 신설 규정함 (안 제12조 신설)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3.8.24. ~ 8.28.) 결과 : 의견 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미래청년기획단) : 원안 가결

## 5. 검토 의견

### 가. 조례안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 현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용어 재정의, 실태조사와 고립청년의 활동 및 지원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2조 제2호의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의를 관련 조례와 각종 연구·조사를 반영하여 재정의하고, 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신설하여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실태조사의 위탁 및 경비지원 근거를 규정하며,
- 안 제8조 제1항 제6호를 신설하여 지원사업 항목에 고립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및 공간 운영 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은 고립청년 지원시설 설치·운영의 근거와 지원시설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규정하며,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u>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u>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u>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u> 집 등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_____ _____ <b>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b> 등으로 _____, <b>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b> _____.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제7조(실태조사 등)

현행	개정안
<p>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p> <p><u>&lt; 신설 &gt;</u></p> <p>제8조(지원사업)</p> <p>① (생략)</p> <p>1. ~ 5. (생략)</p> <p><u>&lt; 신설 &gt;</u></p> <p>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p> <p>② ~ ③ (생략)</p> <p>제10조(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p> <p>① 시장은 청년 지원 관련 기관 등을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① _____</p> <p>_____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8조(지원사업)</p> <p>①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고립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및 공간 운영 사업</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 ③ (생략)</p> <p>제10조(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p> <p>① _____ <u>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고립청년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시 추진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수행</li> <li>2. 고립청년 실태파악을 위한 체계적 조사, 통계 및 연구</li> <li>3. 고립청년을 위한 전용 공간 및 시설 운영</li> <li>4. 고립청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li> <li>5. 고립청년 발굴, 상담 및 일상회복 지원</li> <li>6. 고립청년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사업 및 지원사업 홍보</li> <li>7.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li> </ol> <p><u>&lt; 삭제 &gt;</u></p>

현행	개정안
<신설>	<p><u>제12조(운영의 위탁)</u>  <u>시장은 제8조제1항의 지원사업 또는 제10조제2항의 지원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p>

## 나. 검토 내용

### (1) 관련 법령 및 조례 현황

- 현행 조례는 '21.12.30일 최초 제정되었으며 용어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대한 개별법이나 상위법은 없으나 관련 법령으로 「청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있고, '23.3.21일 「청년기본법」이 개정('23.9.22.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3조 용어의 정의에 “취약계층 청년”이 추가로 규정되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되었음을 고려할 때,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청년'은 취약계층 청년의 한 유형이라 볼 수 있으므로 관련 법적 근거가 강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또한,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개별법 제정<sup>1)</sup> 논의와 「청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기존 법령에 '고립·은둔' 관련 용어나 지원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자는 개정<sup>2)</sup>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1)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 의안번호 2117914, 제안일 : 2022. 10. 25. , 상임위 심사 중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524, 제안일 : 2022. 9. 23., 상임위 심사 중

**「청년기본법」** (2023. 3. 21. 개정, 2023. 9. 22. 시행)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6. ~ 7.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⑤ (생략)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취약계층 청년 유형**

취약계층 청년 유형		조작적 정의	
인적 속성	장애 청년	등록장애 /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청년	
	이주배경 청년	출생지가 북한 또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청년 / 다문화 가족 자녀	
관계적 속성	청년부양자	경제적부양 청년	가구주나 배우자가 아니면서 본인소득이 가구소득의 75% 이상
		한부모 청년	한부모 가정의 부모인 청년
		청년돌봄자	돌봄이 필요한 (조)부모, 형제·자매 등 가구원을 돌보고 있는 청년
	사회적 고립 청년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청년 (은둔, 고립청년)
일자리 특성	미취업청년	니트 청년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훈련 상태에 있지도 않는 청년
		장기/비자발적 실업 청년	장기실업자 또는 비자발적 실업자
	취업청년	저임금 근로 청년	임금수준이 중위임금의 2/3 미만의 청년
		불안한 고용 청년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임시, 일용 종사자 / 1인 자영업 종사자
		열악한 고용환경 청년	주 50시간 초과 근로청년 / 단기근로 청년
경제력 수준	저소득 빈곤 청년	가구처분소득이 중위 50% 미만인 저소득 빈곤가구의 가구원	
	과도한 부채부담 청년	경제력 대비 본인이 상환해야하는 부채부담이 과도한 청년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취약계층 청년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202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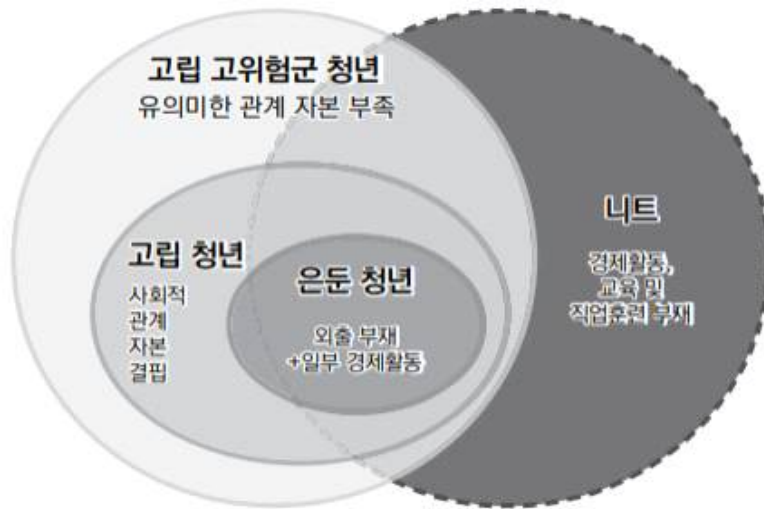
**(2) 조례안 내용 검토**

**“사회적 고립청년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제2호)”**

- 현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개념은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관련 내용을 새롭게 조례에 규정하거나 기존내용을 개정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회적 고립’, ‘고립’, ‘은둔’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sup>3)</sup>은 ‘사회적 고립’을 “정서적 교감을 포함한 도움이 필요한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부재한 상태”를 주된 요소로,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이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부가적인 요소로 정의하고, 이를 재정리하여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거나 결핍된 상태로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은둔’이란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 중 집이나 방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외출을 제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고립·은둔 청년 개념도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모형 개발 연구', 2022.

- 이를 바탕으로 현행 조례 제2조 제2호을 살펴보면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고립청년”을,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것은 “은둔청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겠음

3) 보건복지포럼,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23. 5.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다소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던 “고립청년”의 정의를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 이는 2022년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sup>4)</sup>에서 고립·은둔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실직이나 취업의 어려움’(45.5%)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태조사 결과 반영을 통한 조례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다 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 추진 시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 대상과 사업 범위를 설정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고립·은둔 생활의 원인 및 계기

연번	고립·은둔 생활 계기 (복수 응답 가능)	비율
1	실직하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서	45.5%
2	심리적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40.9%
3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함께 활동하는 등 인간관계 맺는 것이 어려워서	40.3%
4	집 밖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서	39.9%
5	학교/사회 생활이 어렵거나 무의미해서	30.7%
6	따돌림, 괴롭힘, 폭력 등을 경험해서	21.0%
7	학업 중단 혹은 진학 실패로 인해	19.5%
8	가족과 갈등이 있어서	19.3%
9	가정 문제로 인해(가정폭력, 학대, 가족 간 불화, 부모의 이혼 등)	16.3%

출처 : 2022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은둔청년”의 정의에 관한 개정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에서 ‘1년 이상’으로 명시된 고립 기간을 삭제하고 규정 해석의 모호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고립·은둔’의 예방과 초기대응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빠른 사회 재진입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4)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2023. 1. 19., 조사기간 : 2022. 5. ~ 12



- 다만, 현행 조례는 ‘사회적 고립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서울시에서는 ‘고립·은둔청년 지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조례와 사업간 혼란 발생 가능성이 있는바, 용어 정비 및 통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사회적 고립·은둔 관련 정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명>	정의(개념) 조항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은둔형 외톨이”란 <b>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b> 으로 작용하여 <b>일정 기간 이상</b> 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함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은둔형 외톨이”란 <b>사회·경제·문화적 원인</b>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함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	“ <b>사회적 고립청년</b> ”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b>일정 기간 이상</b> 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함

※ 전라남도 조례와 동일

“실태조사 등(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1항은 현행 조례에서 임의규정(~할 수 있다)으로 되어 있는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강행규정(~하여야 한다)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서울시에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해야 하는 점<sup>5)</sup>을 고려하면, 3년 주기의 ‘실태조사’가 민간위탁 현황과 사업평가에도 도움이 되는 등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기간 및 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됨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고립·은둔’ 현상의 특성상 재발과 재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청년들의 사업 참여 전후 비교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강행규정(~하여야 한다) 적용을 통해 ‘실태조사’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의2 제1항에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 등 각종 청년실태조사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중복조사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서울시 청년 관련 조례 중 실태조사 관련 규정

조례명	조문내용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의2(청년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b>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b>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	제5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 ① 시장은 매년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b>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b>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b> 2. <b>청년 구직자 실태조사</b>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연구 및 <b>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b>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8조(청년주거실태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b>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b>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b>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b>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b>자립준비청년등의 생활·주거·진로·취업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b>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2항을 신설하여 실태조사의 위탁 및 경비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함 있는 기관, 단체가 수행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고립청년 활동 공간 마련 및 공간 운영 사업(안 제8조 제1항 제6호)”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제6호는 고립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및 운영 지원사업을 세부사업 항목에 추가하는 것으로, 고립청년이 사회적 관계 형성을 어려워한다는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고립청년의 회복을 위한 공간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됨
- 고립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및 운영 사업이 지원사업에 추가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6. (생략)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고립청년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울시 추진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수행
  2. 고립청년 실태파악을 위한 체계적 조사, 통계 및 연구
  3. 고립청년을 위한 전용 공간 및 시설 운영
  4. 고립청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고립청년 발굴, 상담 및 일상회복 지원
  6. 고립청년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사업 및 지원사업 홍보
  7.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은 기존의 고립청년 지원 시설 설치·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원시설의 기능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고립청년 지원시설은 없으나 '23.4월 발표한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종합지원계획6)'에서

중장기 비전의 하나로 지원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일부조례개정안은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확실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종합지원계획 중 중장기 비전

중장기  
비전

- ① 연차별 집행체계 전환 : '25년부터 지역 밀착형 정책모델로 지역단위 대응
- ② 고립·은둔 활동 인프라(지원공간) : 지역지원센터, 공동생활공간, 자립준비공간 등
- ③ 민간 역량 강화(전문가 양성) : 종사자 자격·역할 표준화, 민간기관 MOU 확대 등
- ④ 청년 참여 및 선순환 생태계 : 청년 참여형 커뮤니티 확대, 은둔고수 멘토링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현행 조례 제10조제1항의 시장이 ‘청년 지원 기관 등’을 고립·청년 지원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삭제되었는 바,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광역청년센터(청년활동지원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다양한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중이므로,
- 이러한 시설을 고립·청년 지원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규정은 유지하여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연계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에 더해 고립·청년 지원시설로 지정 가능한 대상 공간으로 자치구 운영 시설이나 민간 시설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임

“운영의 위탁(안 제12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사업과 지원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은 그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관련 업무 경험이 필요한 사무이므로, 민간위탁에 관한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 조항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중장기적 지원 및 안정적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용어를 재정의하고 정기적인(3년 주기)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고립청년 공간 및 지원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근거와 민간위탁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며, ’21년 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을 거치며 새롭게 발견되거나 보충이 필요한 사항과 내용을 추가·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도 인정됨
- 다만,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념과 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관련 법령 제·개정 추이를 유의해서 살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실태조사’의 경우 기존 청년 관련 조례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실태조사와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재정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조사 방법·내용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목표

### 청년의 삶을 되찾아주는 「서울형 고립·은둔 지원 모델」 정립

[’23년] 사회적 이슈화 & 선제적 밀착지원 사례 확산 → [’25년~] 본격적 지역 대응체계 구조화

## 추진 방향

- ① 전국 최초, 발굴부터 사회복귀까지 **원스톱 지원&관리 프로세스** 구축
- ② 서울시 쉼 부서 협업 체계 가동으로 **고립·은둔 회복 종합 패키지** 제공
- ③ 다양한 공공, 민간기관과 MOU 체결 등 **밀착형 협력 네트워크** 구성

맞춤형 청년지원

## 세부 과제

① **촉촉한 발굴체계 구축**

- ▶ **민관협력으로 지역기반 밀착 발굴체계 가동**  
- 복지전달체계, 동주민센터·통반장 등 활용으로 지역 밀착 발굴
- ▶ **고립·은둔 예방 위한 아동·청소년기부터 관리**  
- 청년 진입 前 위기 관리 및 사전 DB확보, 예방 지원 실시

② **정확한 진단과 맞춤 지원**

- ▶ **체계적·과학적 진단을 통한 마음건강 살피기**  
- 개별 성격/육구 진단을 통한 자기이해 강화, 상담, 사례관리
- ▶ **고립·은둔의 특성별, 유형별 맞춤 프로그램 지원**  
- 정서회복, 관계회복, 자신감회복, 신체/취미/예술활동, 일 경험 등

③ **안전한 사회복귀 발판 마련**

- ▶ **안정적 사회 진입을 위한 일 경험 프로그램 지원**  
- 공동작업, IT/웹디자인(재택) 등 다양한 일 경험 연계
- ▶ **자립성공 준비를 위한 해외봉사, 직무교육 등 경험 제공**  
- 해외봉사로 삶의 변화 계기 마련, 직무교육으로 취업역량 강화 등

사회적 인식개선

① **대시민 인식 개선**

- ▶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캠페인**  
- 따뜻한 메시지 전파, 당사자 인터뷰, 릴레이 캠페인 등 진행
- ▶ **문턱 낮은 참여 유도를 위한 적극적 홍보 전개**

② **민관협력 강화**

- ▶ **중앙부처와 정책 협력관계 확대로 공공성 확보**
- ▶ **각 분야의 민간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 확립**  
- 의료, 뷰티, 요식, 체육, 청년 친화 기업 등 민간자원 활용·공유



※ Two Track 방식의 시범사업 운영

## 중장기 비전

- ① 연차별 집행체계 고도화 : '25년부터 광역/지역형 정책모델로 지역단위 대응
- ② 고립·은둔 지원공간(인프라) : 지역지원센터, 공동생활공간(권역별), 자립준비공간 등
- ③ 민관 정책 협의체(민간기관 MOU확대 등) 및 청년 참여형 커뮤니티 활동 확대

① 고립청년 지원사업

-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 : 897명 발굴 및 신청, 최종 520명 지원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886회, 1,165명 참여 (누계, 중복 집계)

구분	지원대상	참여인원	사업내용
중앙센터 (중부센터)	97명	1,165명	· 관계기술, 진로탐색, 취업역량, 특화 프로그램
남부센터	61명	158명	· 노동법 교육, 이미지메이킹, 템플스테이, 전시관람 등
동남센터	52명	175명	· 관계기술, 진로탐색, 취업역량, 청년생활 백서제작
동북센터	90명	497명	· 관계맺기 파티, 성향이해 프로그램, 진로탐색(강연)
북부센터	80명	327명	· 관계기술, 진로탐색, 취업역량 등
서남센터	75명	234명	· 자아탐색, 관계형성, 소그룹 활동, 종합심리검사
서북센터	65명	388명	· 스포츠몬스터, 색채테라피, 퍼스널컬리티 등

- 진로 및 취업 등 프로그램 참여 이후 자립 성공 : 64명 취·창업
- 자신감 향상 및 활력 증진 통해 구직의욕 고취 : 123명 구직활동 시작
-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28명, 구직신청 안료 72명, 직업훈련 참여 23명

② 은둔청년 지원사업

- 은둔청년 발굴 및 지원 : 531명 발굴 및 신청, 최종 237명 지원

구분	신청	1차 상담 진행 <sup>(1)</sup>	선정·지원 <sup>(2)</sup>	기타 사업 연계 <sup>(3)</sup>	미선정 <sup>(4)</sup>
인원	531명	492명	237명	49명	206명

(1) 1차 상담진행 : 은둔 여부 확인 및 프로그램 참여 일정 확인을 위한 상담  
 (2) 선정·지원 : 은둔청년으로 확인된 청년을 선정하여 맞춤 프로그램 지원 (중도포기자 : 47명)  
 (3) 기타 사업 연계 : 타 지원사업이 더 적합할 경우, 고립청년 사업 혹은 마음건강 사업으로 연계  
 (4) 미선정 : 1차 상담 결과 은둔청년이 아닌 경우, 연락두절된 경우, 자진포기한 경우 → 미선정 처리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671명 참여** (누계, 중복 집계)

- 상담인원 : 발굴 및 초기상담 701명, 심리상담 188명
- 기타 참여형 프로그램 : 2,78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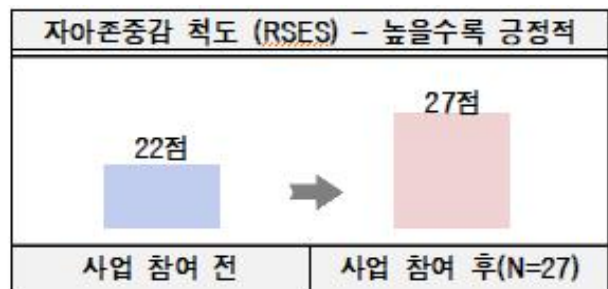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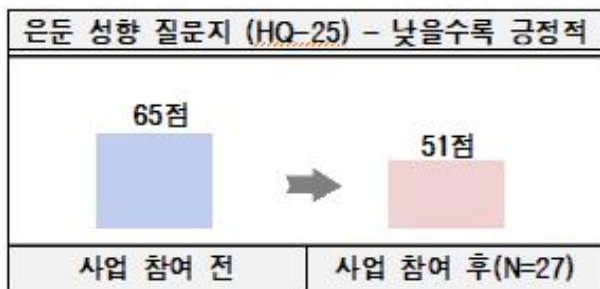
구분	신체건강	정서건강	관계형성, 취미활동	지적건강	기관연계	기타
참여인원	690명	515명	1,153명	310명	29명	85명
주요내용	요가, 산책, 야구	예술창작, 미술치료	회복모임, 쿠킹, 베이킹, 자조모임	MBTI, 글쓰기	연극캠프, 트래킹	부모교육, 공동생활

○ **회복 프로그램 참여 이후 자립 성공 : 20명 취업 및 진학 등**

프로그램 참여 후 성과	세부 사례	인원
취업 및 일경험 (18명)	일반기업 취업, 단기계약 (일경험, 정림건축)	8명
	물류 관리자 취업	1명
	바리스타 자격증	2명
	비영리법인 단체 취업 (청년문간, 행복공장)	4명
	약국 취업	1명
	조주기능사	1명
	헬스 트레이너 준비	1명
대학 진학 및 복학 예정 (2명)	대학입학 완료	1명
	대학입학 예정자	1명
<b>총 합</b>		<b>20명</b>

○ **사업참여 이후, 은둔 성향 감소 및 자아존중감 증가**

- 관련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질문지 활용 결과 사업 참여 후 **은둔 성향은 65점→51점으로 낮아지고, 자아존중감은 22점→27점으로 높아져** 사업효과 확인



※ **관련 설문지 및 조사방법**

- ▶ 은둔 성향 질문지(HQ-25) : Teo등(2018)이 개발, 42점 이상 시 은둔 성향이 큰 것으로 추정
- ▶ 자아 존중감 척도 : 로젠버그가 개발한 척도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주로 사용 중  
(30점 이상: 자존감 높은 수준 / 20~29점: 자존감 보통 수준 / 10~19점: 자존감 낮은 수준)